

보상금 지급 청구 (기각·각하) 통지서
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보상 결정 사항	결정 내용	
	결정 이유	

「소방기본법」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(제2항·제3항)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(기각·각하)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※ 문의: (담당부서 및 담당자)
(전화번호)

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

직인